

소수자 난민 권리를 위한 첫걸음

# 무지개는 국경을 넘는다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퍼냄





소수자 난민 권리를 위한 첫걸음  
무지개는 국경을 넘는다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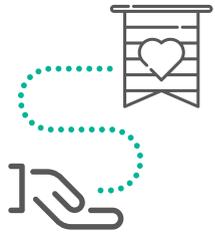


## 가이드북을 내며

7

## 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1. 난민은 누구인가요? 15
2.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난민이 있나요? 16
3. 한국에도 난민이 있나요? 17
4. 이들은 왜 한국을 선택했나요? 17
5. 난민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나요? 18
6. 한국의 난민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9
7. 한국에서 난민이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나요? 21
8. 우리나라에는 어떤 소수자 난민들이 있나요? 22
9. 난민법이 시행된 이후로 무분별하게 난민이 유입되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 치안이 나빠지지 않을까요? 23
10. 난민은 테러나 폭동의 주범이기도 하다는데요? 23
11. 불법체류 난민의 남용적 난민 신청, 큰 문제 아닌가요? 24



## 성소수자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1. LGBT? 성소수자? SOGI? 어떤 단어를 써야 하는지 너무 헷갈려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34
2. 동성애는 선천적인가요? 후천적인가요? 질병이 아닌가요? 35
3. 커밍아웃 안 하고 조용히 숨어서 살면 안 되나요? 36
4. 성소수자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37
5. 성소수자들은 사회에서 어떤 차별들을 경험하나요? 38
6. 트랜스젠더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차별이 있나요? 39
7. '동성애=AIDS' 이거 정말 사실인가요? 40
8.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합니다. 앨라이(Ally)가 되는 법을 알려주세요! 40
9. 성소수자에게 안전한 공간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42

## 성소수자 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1. 성소수자 난민이란? 49
2.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난민이 될 수 있나요? 49
3. 현재 한국에서 성소수자 난민은 어떤 기준을 통해 심사되고 있나요? 50
4. 우리나라에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해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52
5. 성소수자 난민 요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52
6. 국가정황정보조사(COI)를 했지만 별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4
7. 난민 심사 과정에서 성소수자 난민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55
8. 성소수자 난민을 만날 때 특별히 배려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57



## HIV 감염인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1. HIV 감염인과 AIDS환자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67
2. HIV 감염인 난민과 공동생활을 해도 괜찮나요? 68
3. HIV 감염인 난민은 모두 동성애자인가요? 70
4. HIV 감염인 부모도 임신 출산할 수 있나요? 71
5. HIV 감염을 이유로 강제출국 당하나요? 72



## HIV 감염인 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1. HIV 감염인 난민을 만났을 때 다른 난민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나요? 75
2. 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HIV 감염인 난민에게 어떤 조언을 해야 하나요? 77
3. 갈 곳 없는(거주할 공간이 없는) HIV 감염인 난민에게는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요? 78
4. HIV 감염인 난민이 한국에서 거주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차별은 무엇이 있을까요? 80
5. HIV 감염인 난민을 만날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82
6. HIV 감염인 난민에게 소개할 수 있는 자조모임은 있나요? 83

##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협력 단체 소개 86

## 가이드북을 내며

한국에서도 이제 ‘난민’이라는 말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난민 이슈가 부상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내 난민 신청자와 난민인정자도 늘어나고 있지요. 그렇지만 여전히 난민이라고 하면, 낯설고 잘 보이지 않는 존재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편화된 이미지들 속에 난민 개개인의 목소리와 개성은 부차적으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특정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차이가 무시될 수는 없습니다. 난민 여성, 난민 아동들이 겪는 특수한 문제가 존재하고, 나아가 성소수자인 난민이나 HIV 감염인인 난민으로서 마주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듯이 장애가 있는 난민들은 한국의 장애인 복지 혜택에서 배제돼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는 각기 성소수자, HIV 감염인, 난민 인권 활동을 하던 활동가들이 성소수자 난민과 HIV 감염인 난민을 만나고 돕는 과정에서 함께 협력하며 고민을 나누게 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성소수자, HIV 감염인 인권활동가들은 난민에 대한 이해 부족과 난민 제도 및 지원 체계에 대한 정보 부재로 어려움을 겪었고, 난민 인권활동가들은 성소수자와 HIV/AIDS에 대한 이해와 정보 부족을 느껴왔습니다. 한편에서는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난민,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상호작용해 소수자 난민들에게 더 큰 차별과 배제를 낳기도 하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었습니다.

각 영역의 활동가들이 개별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데에서 나아가 우리는 아름다운재단의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통해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를 만들어 ‘소수자 난민’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발을 내딛기로 했습니다.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는 지난 1년 동안 성소수자 및 HIV/AIDS 이슈, 난민 제도와 난민 인권에 대해 상호 교육하고, 소수자 난민 인권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로 난민 관련 활동가들에게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결성을 알리고 HIV/AIDS, 난민, 성소수자를 키워드로 수다회를 개최해 우리의 현실을 파악하고 고민 지점을 나눴습니다. 동시에 관련 단체들을 방문해 각 영역의 현안과 활동을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더 체계적으로 각 영역과 소수자 난민 인권이라는 주제에 접근하기 위한 공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은 서로의 분야

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들을 기회이기도 했지만, ‘소수자 난민’이라는 존재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3일에 걸쳐 6차례의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연인원 100여 명이 참석한 것입니다.

---

이 자료집은 이런 활동의 결과물입니다. HIV/AIDS, 성소수자, 난민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를 한 권의 자료집으로 전달하고, 동시에 소수자 난민에 대한 고민을 담고자 했습니다. 난민을 만나는 사람들, 난민 인권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소수자 인권에 대해 알리는 것, 한편에서는 소수자 운동에 난민에 관한 기본 개념과 정보들을 전달하는 것이 자료집의 첫째 목적입니다. 소수자난민에 대한 인식이 낮고 별도의 지원체계가 전무한 현실에서, 관련 공무원, 난민지원단체 활동가, 변호사 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난민을 만나는 사람들조차 소수자 난민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이 자료집을 통해 소수자 난민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권감수성을 갖춘 태도로 소수자난민을 대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도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아가 소수자 난민들이 사회 안에서 더 많이 드러나고 소수자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난민’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하나의 소수자 집단 속에도 다양한 차이와 그로 인한 특수한 인권 현실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려는 시도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IV 감염인이나 성소수자 또한 획일적인 존재들이 아니라 각각의 얼굴과 이야기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공통된 차별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하나의 집단으로 묶일 수 없는 것이 소수자 집단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 해소, 인권 증진은 그 집단에 부여된 특수한 이미지, 낙인과 정형화를 깨는 일이기도 합니다. 난민이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성소수자나 HIV/AIDS 감염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아주 단순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난민/성소수자/감염인’이라는 딱지를 벗겨내고 사람을 보는 것이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출발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차이를 뭉뚱그리는 방식이 아니라 그가 특정한 소수성으로 인해 겪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함께 살피고 고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의 고민은 아직 성소수자 난민과 HIV/AIDS 난민에 국한돼 있습니다. 다른 소수자성을 가진 난민 이슈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한 지점에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소수자 영역에서 난민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더 확장되고, 동시에 난민들을 만나고 돕는 이들이 소수자 난민들을 만난 경험과 고민을 나누는 일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이어가는 다양한 소수자 난민들이 존엄과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그 길에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가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가)

---

####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실무진 소개

고은지(난민인권센터)

김지림(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준태(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나라(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정율(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 1. 난민은 누구인가요?

난민은 박해, 분쟁 등의 공포로 인해 자신의 국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난민은 국가가 해당 국민을 보호하기를 거부했거나 실패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전쟁, 자연재해, 인종이나 종교적 차별과 박해 등으로 인해 자신의 거주지를 떠나 다른 지역에 정착하여 일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이주, 즉 강제적 이주 **forced migration**와 보호받을 곳을 찾는 것 **asylum-seeking**은 인류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하는 현상이었습니다.

‘난민’이라는 현대적 의미의 법률적 개념은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발생한 피난민에 대한 보호가 국제사회의 주요한 문제로 부상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유엔은 1949년 유엔난민기구를 설립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1951년 7월 28일에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을 채택, 1954년 4월 22일에 난민협약이 정식으로 발효되면서, 현존하는 국제난민레짐 **International Refugee Regime**이 완성되었습니다.

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이 되기 위해서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하는데, 그 원인이 인종, 종교, 국적(민족), 특정사회집단구성원의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으로 인한 것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995년 르완다 대학살과 같은 인종청소나 미얀마에서 군부독재에 반대하여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고문을 받은 경우 또는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할례를 받거나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 외국으로 탈출한 사람들을 모두 난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난민협약이나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의정서’)에 명시된

난민의 법적인 정의는 당시 시대적 배경이 제한적으로 반영된 결과로써 협소하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 2.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난민이 있나요?

분쟁, 폭력, 박해를 피해 전 세계적으로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은 2016년 기준 6,530만여 명이 있습니다. 3초마다 1명이 집을 잃고 피난길에 오르고 있는 셈입니다. 이들 중에는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미얀마와 같이 수십 년간 계속되고 있는 위기 상황들로 인해 집을 떠나야만 했던 이들이 있는가 하면, 콩고민주공화국, 중앙아메리카 북부지역, 시리아 등 21세기에 들어와 위기가 가속화된 지역 출신도 있습니다. 시리아 국민의 경우 3명 중 2명은 집을 잃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수백만 명의 난민을 보호하는 것은 주로 주변국의 몫이 되고 있으며, 이 국가 중 대부분은 저소득 혹은 중산층 국가입니다. 현재 터키가 290만 명 이상, 파키스탄은 160만 명 이상, 레바논 100만 명 이상, 우간다가 90만 명 이상의 난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164개국에 280만 명이 난민 신청을 했으며 전체 난민 2명 중 1명은 아동입니다.



### 3. 한국에도 난민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 1992년에 난민협약과 의정서에 가입했고, 1994년부터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난민 신청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1994년부터 2017년 4월까지 접수된 누적 수가 총 25,510건입니다. 하지만, 이들 중 688명만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들은 시리아, 콩고민주공화국,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이집트, 우간다, 중국, 나이지리아, 이란, 방글라데시 등 다양한 나라의 출신이며 이들이 난민 신청을 하는 주된 이유는 종교(24%), 정치적의견(18%), 특정사회집단구성원(16%), 인종(7%), 가족결합(3%), 기타 내전(28%) 등이 있습니다(2016년 기준).

### 4. 이들은 왜 한국을 선택했나요?

이들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난민 신청자들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난민은 급박한 상황에서 한국 외의 다른 선택지가 없어 한국행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난민은 이렇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발밑에 폭탄이 떨어졌는데, 어느 창문으로 탈출할지 고민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보이는 창문에 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빨리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었기 때문에 오는 경우, 본인의

신념과 자유, 그리고 목숨을 지킬 수 있기 위한 나라로써 한국을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로 선택하고 온 경우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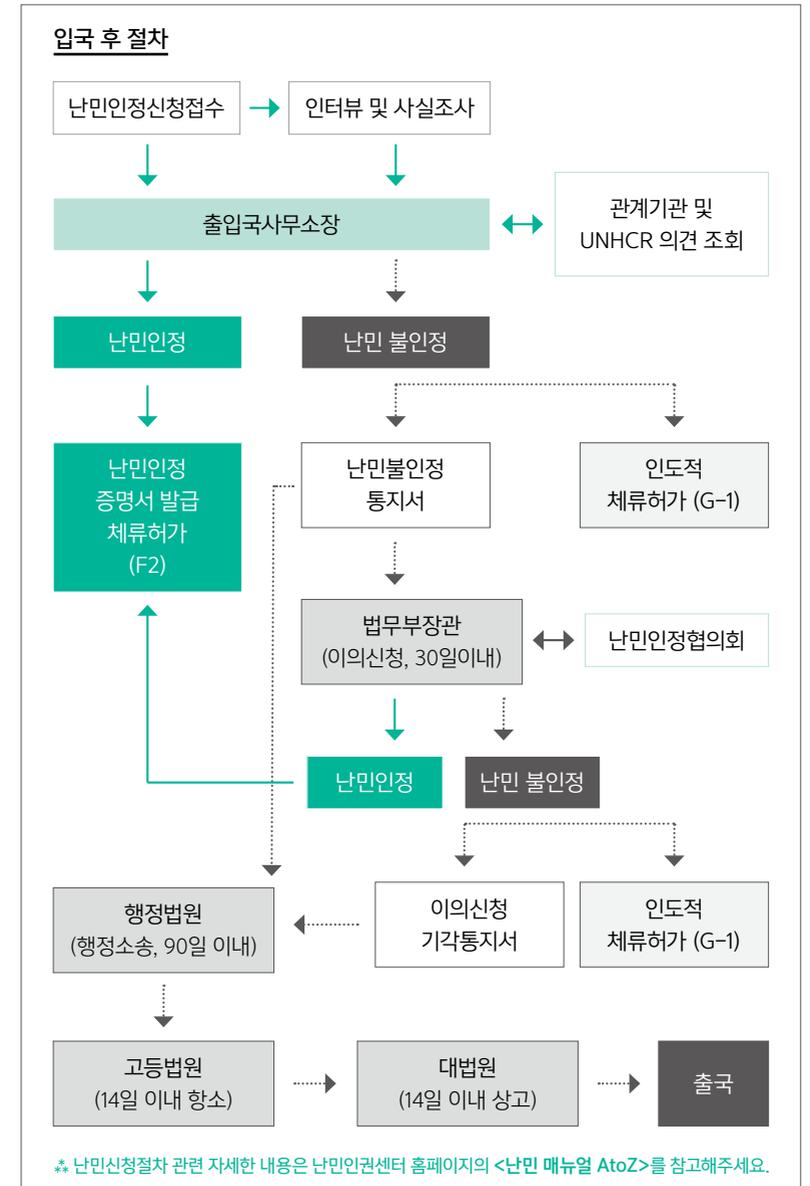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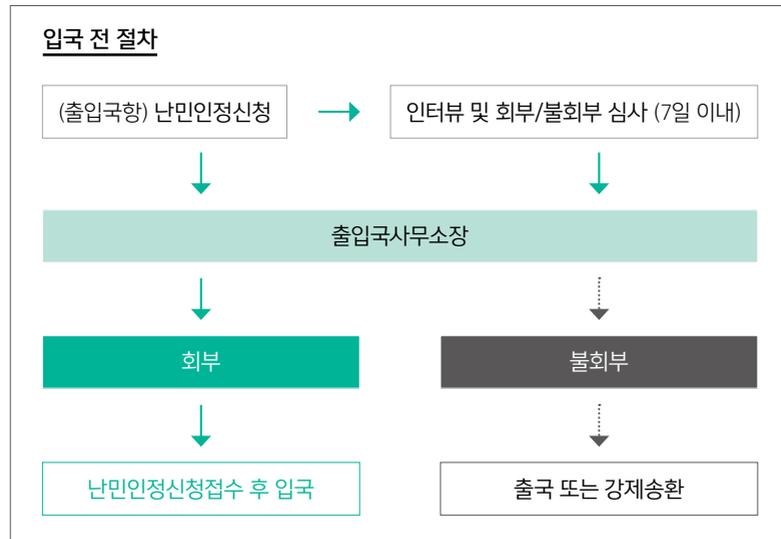
### 5. 난민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나요?

세계인권선언 14조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 피난처를 구하고 그곳에 비호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것은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강제송환금지 원칙’ 또한 난민의 주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강제송환이란 당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난민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난민은 본국 정부에 의해 박해를 받거나, 박해의 상황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던 이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난민을 출신 국가로 돌려보내게 된다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난민의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것은 난민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난민에게 주요하게 부여되는 권리 중 또 다른 하나는 ‘가족결합의 원칙’입니다.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난민으로 인정되었거나 가족 구성원이 각기 다른 국가에서 난민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나머지 가족들도 난민으로 인정되어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난민협약은 이 외에도 난민의 다양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난민도 체류하고 있는 나라의 국민들과 동일하게 사회복지와 공공교육의 혜택을 누리고, 노

동3권과 지적 재산권을 보장받고, 재판을 받거나 국내외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재산의 소유나 직업 선택, 결사의 권리, 주거를 위한 권리 등 다른 이주민들 가운데서도 가장 유리한 대우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참정권을 비롯한 일부 정치적 권리를 제외하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권리에서는 자국민과 동일하게 보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권리는 난민인정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난민 심사 절차를 밟고 있는 신청자들에게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 6. 한국의 난민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7. 한국에서 난민이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나요?

난민은 한국 문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며 제한된 정보와 자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난민 신청자들은 난민 심사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심사가 진행되는 긴 기간 동안 미래를 계획하기 힘든 불확실한 시간을 견뎌야만 합니다. 인종차별과 강제 출국의 위험을 맞닥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상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고, 여성이나 노인 또는 몸이 불편한 경우에는 더욱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의 엄격한 체류 정책으로 인해 쉽게 미등록체류 상태가 되고 구금이 될 위험도 높습니다.

난민 심사 과정에서는 적절한 통역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충분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낼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 절차와 권리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어떤 곳에서도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출입국 직원의 모욕적인 태도를 견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결혼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기가 어렵고, 아이가 생기면 출생등록을 할 수 없어 무국적자가 되기 쉽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신청자보다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문화, 언어, 직업 교육 등의 체계적 지원은 없습니다. 난민 인권센터 연구에 따르면, 본국에서의 심각한 박해로 인해 생기게 된 트라우마만큼이나 한국에서의 불안정한 삶과 인권침해, 무관심으로 연계 되는 트라우마가 큰 상황입니다.

## 8. 우리나라에는 어떤 소수자 난민들이 있나요?

한국에서는 '소수자' 개념이 2000년경 이후로 사회의 전면에 등장하고 보급되기 시작하며 '소수자'로 간주되고 있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HIV나 에이즈 감염인, 양심수, 북한이주민, 미숙련·비정규·외국인노동자, 아동, 실향민, 양심적 병역거부자, 노숙자, 노인, 결혼이주민 등이 있습니다. (한은미 외, 2012:217) 난민은 모두가 다 다른 각각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와 같은 다양한 소수자 정체성을 교차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난민 아동의 경우 1,887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2017. 10. 31 기준). 소수자 난민은 이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무관심과 더불어, 끈질기게 자행되는 인권침해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곤 합니다. 이들은 성소수자, HIV에이즈 감염인, 여성, 장애인, 아동, 노인 등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 한국까지 오게 되었지만, 한국에서마저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자신들의 권리를 복합적으로 배제 받는 모순적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 9. 난민법이 시행된 이후로 무분별하게 난민이 유입되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 치안이 나빠지지 않을까요?

난민법이 시행되었다고 난민이 무분별하게 유입되지 않습니다. 난민법에 의해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만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심사 그리고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판단을 거쳐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지위가 주어지게 됩니다. 즉, 난민 지위를 신청한다고 하여 무조건 난민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며, 한 명의 난민 신청자가 난민으로 인정되기까지는 평균 3~4년의 시간이 소요될 만큼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난민인정 후에 위중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난민인정이 취소되고 강제퇴거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실제로는 난민이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10. 난민은 테러나 폭동의 주범이기도 하다는데요?

최근 국제정치적 환경 속에서 난민이 겪는 가장 큰 오해는 테러와의 연관성입니다. 사실 2001년 이후 서방 국가들을 상대로 벌어진 테러 사건들 가운데 난민이 주범인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오히려 난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수용국의 내부적 모순과 문제들을 분출시키는 것이 현실입니다. 난민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중적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난민은 테러와 범죄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 오해받기

시작했을까요? 난민을 대규모로 수용하는 난민 캠프들은 국경 너머 인접 국가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탓에 강대국 혹은 정치적, 군사적 이해관계를 지닌 집단에 쉽게 이용당하곤 했습니다. 냉전 기간 동안 강대국들은 난민 캠프들을 자신들이 지지하는 반군의 군사적 거점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이런 현상이 만연함에 따라 난민과 난민캠프는 준군사적 집단 혹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1990년대 이후 세계화의 진전은 이주를 가속화시키고, 인신매매나 밀입국이 증가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인신매매나 밀입국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사업화되면서 초국가적 범죄 망과의 연관성도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인신매매 및 밀입국 루트가 아이러니하게도 난민들에게는 생명줄이 되어 주기도 합니다. 자국 정부의 박해와 단속을 피해 탈출해야 하는 난민들에게 밀입국 브로커 혹은 범죄집단이 탈출 루트를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난민들에게 초국가적 범죄집단과의 연관성 또는 인신매매나 밀입국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집단이라는 오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 11. 불법체류 난민의 남용적 난민 신청, 큰 문제 아닌가요?

불법체류 난민이라는 용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난민 신청의 권리는 체류상태와 관계없이 세계인권선언과 난민협약에 따라 부여되는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난민 자격을 심사하여 지위를 부여하는 것과

난민 지위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난민’이라는 용어에 ‘불법’이라는 수식어 붙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허가된 체류기간을 넘긴 이주민들을 흔히 ‘불법체류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유엔 이주민인권특별보고관은 미등록 체류가 행정법규의 위반일 뿐 형사상 범죄는 아님을 역설해왔습니다. 국제이주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1975년 유엔의 결의안 채택 이후 오랫동안 ‘불법’이라는 어휘 대신 ‘미등록’이라는 어휘를 사용할 것을 권고해 왔습니다. 실제로 난민 중에는 미등록 체류 중에 난민 신청을 하거나, 난민 신청 중에 미등록 체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을 ‘불법체류 난민’이라는 낙인과 함께 범죄자 취급을 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박해를 받을 위협으로 인해 본국에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은 한국에서 체류를 등록하고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난민이 실제로 경험하고 느끼는 삶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한국의 지나치게 엄격한 난민 정책으로 인해 미등록 체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또한 ‘남용적’ 난민 신청이라는 말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난민 신청의 권리는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보편적 권리이기 때문에 ‘남용’이라는 표현은 권리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난민 대부분이 난민법과 해당 요건을 완벽히 이해하고 난민 신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난민 심사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난민 신청의 남용을 우려하기보다 전문적인 난민 심사를 위한 제도를 갖추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 난민과 관련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난민인권센터** [nancen.org](http://nancen.org)

전화: 02-712-0620(화~목)

이메일: [refucenter@gmail.com](mailto:refucenter@gmail.com)

**유엔난민기구 한국지부** [www.unhcr.or.kr](http://www.unhcr.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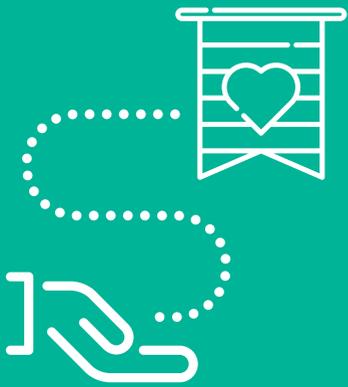
전화: 02-773-7011

이메일: [unhcr@unhcr.or.kr](mailto:unhcr@unhcr.or.kr)

## 참고문헌

- 국내 난민 통계, 2017, 난민인권센터
- 글로벌 동향 보고서, 2016, 유엔난민기구
- 난민에 대한 네 가지 오해, 2017, 최원근
- 마이너리티란 무엇인가, 2012, 한은미 외, 한울아카데미
- Forced Migration Review, 2016, Refugee Studies Centre

성소수자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

## 이것만은 알아두자!

### 성소수자

성소수자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등과 같이 다양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사회에서 규범적으로 여겨지는 이성애와 이분법적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아우르는 말로 한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 LGBT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그리고 트랜스젠더Transgender의 머리글자를 합친 용어로 서구에서 1990년대 이후 널리 사용됐습니다. 네 가지의 정체성만을 명시하고 있어 최근에는 다양한 정체성 들을 포괄하기 위해 LGBTI, LGBTQIA+ 등 확장된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성적 지향

성적 지향은 보통 한 사람이 어떤 상대에게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을 가능성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성별에 매력을 느끼고(이성애/동성애), 다수의 성별에 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양성애/범성애). 일부는 어떤 성별의 사람에게도 성적 끌림을 느끼지 않습니다(무성애).

---

### 동성애자

동성에게 성적 끌림을 느끼고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을 말합니다.

### 게이

남성에게 성적, 애정적 끌림을 느끼는 남성 동성애자를 뜻합니다. 서구에서는 동성애자를 통칭하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트랜스젠더를 포함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구별하여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 레즈비언

여성에게 성적으로 끌리고 깊은 관계를 맺는 여성 동성애자를 지칭합니다.

### 양성애자·바이섹슈얼Bisexual

남성과 여성에게 성적으로 끌리고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을 뜻합니다.

### 무성애자·에이섹슈얼Asexual

성적 끌림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에이섹슈얼은 성적 욕구를 느낄 수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욕이 대상에 대한 성적 이끌림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 다성애자/범성애자Polysexual/Pansexual

남성과 여성을 포함해 제3의 성이나 젠더퀴어 등 3개 이상의 성별에 성적 끌림을 느끼는 사람과 상대방의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성별정체성에 성적 끌림을 느끼는 사람을 말합니다.

---

### 성별 정체성

자신의 성별에 대해 느끼는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으로 출생 시 부여된 성과 일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감각, 복장, 화법, 및 습관과 같은 젠더 표현을 포함합니다.

### 시스젠더

신체적으로 드러나는 성별과 본인이 인식하는 성별이 일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트랜스젠더

주로 신체적 성별 특징(염색체, 호르몬, 성 기관 등)에 따라 출생 시 지정받은 성별과 본인이 인식하는 성별이 다르다고 느끼거나, 불일치하거나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료적 조치를 수행하느냐 여부는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개인마다 성별 이행(트랜지션)의 폭과 과정, 속도는 다양합니다. 생물학적인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여성으로 정체화하는 경우 MTF<sup>male to female</sup> 또는 트랜스여성, 생물학적인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남성으로 정체화하는 경우 FTM<sup>female to male</sup> 또는 트랜스남성이라고 지칭합니다.

### 젠더퀴어

젠더를 남성과 여성 둘로만 분류하는 기준의 이분법적 성별로 분류할 수 없는 성별 정체성 또는 그러한 성별 정체성을 가진 개인을 지칭합니다.

---

### 성별 표현

복장, 머리 모양, 말투, 걸음걸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태도를 비롯한 성격과 행동, 성별 역할 포함해 특정한 문화적 맥락에서 남성성, 여성성과 결부되는 인간 특성들을 말합니다. 성별 표현은 성별 고정관념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성적 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 상관없이 성별 표현으로 인한 차별이나 폭력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 SOGI(E)

성적 지향<sup>Sexual Orientation</sup>과 성별정체성<sup>Gender Identity</sup> 및 성별 표현<sup>Gender Expression</sup>의 머리글자를 합친 용어로 최근 국제기구나 법률 문서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성별 표현은 모든 사람이 지니는 특성을 지칭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특정 정체성만이 아니라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법은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성적 특징

성별을 구분 짓는 성 기관, 염색체, 호르몬 등 신체적 특징을 일컫는 말입니다.

### 인터섹스(간성)

변이된 성적 특징을 지니고 태어나 남성 신체 또는 여성 신체의 전형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계적으로 매년 인터섹스로 태어나는 신생아의 비율은 약 1.7%로 추정됩니다.

### 커밍아웃

'벽장 속에서 나오다'를 의미하는 'coming out of the closet'이라는 표현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진 말로, 성소수자가 본인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알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아웃팅

한 사람의 정체성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앨라이

보통 성소수자가 아니면서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에서도 자신과 다른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지지하고 옹호하면 앨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호모포비아

동성애, 동성애자, 또는 동성애자라고 간주되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혐오, 불신 및 의심을 말합니다. 이는 동성애자에 대한 낙인, 비하하는 단어, 괴롭힘, 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트랜스포비아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라고 간주되는 사람 그리고 성별 표현이 성별이분법적인 정형에서 벗어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혐오, 불신 및 의심을 말합니다. 이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낙인, 비하하는 단어, 괴롭힘, 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1. LGBT? 성소수자? SOGI?

어떤 단어를 써야 하는지 너무 헷갈려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LGBT, SOGI, 성소수자라는 용어는 의미와 포괄하는 범위가 조금씩 다르고 사용되는 맥락에 차이가 있을 뿐이며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단어 모두 우리나라 및 많은 나라의 제도, 정책, 법 테두리 안에서 이미 공인된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대해 언급할 때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많은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데 오랜 시간 많은 고민을 거치고, 이런 정체화 과정이 지속 중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자세로 올바른 용어와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인간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해와 고민이 깊어지면서 새로운 개념 및 정체성 용어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열린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동성애는 선천적인가요? 후천적인가요? 질병이 아닌가요?

동성애가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아직 없습니다. <미국심리학회>는 “개인의 성적 지향이 이성애, 양성애, 동성애로 발달하는 정확한 이유에 관해 과학자들 간에 일치된 의견은 없고, “성적 지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전적 요인, 호르몬상의 요인, 그리고 발달 및 사회문화적 요인에 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지만, 성적 지향이 특정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는 연구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동성애 원인론은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를 불문하고 동성애를 문제로 여기는 데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동성애를 질병으로 여기거나 잘못된 문화나 왜곡된 성인식의 산물로 격하시키고 치료나 교정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동성애자의 존재와 존엄을 부정하며,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에게 성적 지향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선택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학계는 동성애를 질병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1974년에 미국정신의학회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DSM의 정신 질환 범주에서 동성애를 삭제했고, 세계보건기구는 1992년 국제질병사인분류 ICD에서 동성애를 삭제했습니다.

성소수자가 되는 이유에 대한 궁금증보다 성소수자에 대한 존중으로부터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커밍아웃 안 하고 조용히 숨어서 살면 안 되나요?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낙인과 차별이란 큰 장벽으로 인해 커밍아웃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자발적 선택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압력에 강요된 것입니다. 많은 성소수자들이 정체성을 드러낼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고통을 겪습니다.

커밍아웃은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발견, 인정 및 수용하는 과정, 자신의 정체성을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 그리고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나오고 활동하는 과정 등 일련의 과정을 포함합니다.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외부의 다양한 사람들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소통을 기반으로 한 과정이기에 커밍아웃을 하는 당사자가 충분히 심사숙고한 다음에서야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긍정적인 소통이 이루어진 경우에 커밍아웃은 이를 감행한 당사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소통이 이루어진 경우에 이는 상대방으로부터의 언어 및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거나 우울증, 무력감 등 만성적인 정신건강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커밍아웃은 성소수자의 존재를 알리는 행위로서 의미도 있습니다. 60년대 말부터 세계적으로 성소수자들의 커밍아웃이 늘어났고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성소수자 인권 증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한국사회는 70~80%의 사람들이 내 주위에 성소수자가 없다고 생각할 만큼 이성애규범이 강합니다. 이런 한국사회에서 커밍아웃은 성소수자로서 자신 존재를 알리는 하나의 운동이자 중요한 실천입니다.

#### 4. 성소수자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소수자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확실적인 지표나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은 본인의 감정, 인식과 삶 경험의 총체로서 스스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을 동성애자 또는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로 정체화하는 시기나 과정은 모두 다릅니다. 또한 성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은 결혼 여부나 출산 경험 또는 그 이전의 친밀한 성적인 관계와는 무관합니다.

트랜스젠더의 경우 정신과 진단을 받지만, 이것은 정체성을 판정받는다고보다 원하는 성별 이행을 위한 의료적 조치로 이해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정체성의 병리화가 사회적 낙인을 강화한다는 비판에 따라 정신행동 장애 분류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성별 고정관념과 마찬가지로 특정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한 고정관념도 사회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게이는 패션 감각이 뛰어나거나 말투나 행동이 여성스러운 것으로 그려지곤 합니다. 하지만 성소수자도 말하는 방식, 행동 양식, 선호나 취향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몇몇 특징을 염두에 두고 자신 또는 상대방을 성소수자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충분히 마음의 준비가 된 다음에 직접 커밍아웃을 하는 것을 원하고 상대방이 먼저 알아주기를 원할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힌트를 주곤 합니다.

#### 5. 성소수자들은 사회에서 어떤 차별들을 경험하나요?

성소수자들은 학교, 일터에서, 그리고 일상생활 전반에서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사나 다른 학생으로부터 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 동성 간의 교제를 금지하는 학교 정책, 모욕적인 말 그리고 아웃팅과 같이 교사 및 다른 학생으로부터의 괴롭힘 문제가 심각합니다.

채용과정에서는 지원자의 외모, 복장, 행동 등과 같은 성별표현이 법적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이나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된 이후에도 업무배치, 승진, 사내 복지 등에서의 차별 그리고 남자/여자답지 못하다는 반복적 지적, 성희롱, 비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오랫동안 동반자로 같이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수술 동의서 서명 또는 중환자실 방문을 할 수가 없으며 특정 질환의 발병 원인을 개인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과 결부시키려는 경우 또한 많이 있습니다.

## 6. 트랜스젠더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차별이 있나요?

트랜스젠더의 경우 성소수자 전반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차별 이외에도 출생 시 부여된 법적 성별과 스스로 정체화하는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파생되는 다양한 어려움 및 차별을 경험합니다.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법적 성별 정정입니다. 한국의 성별 정정은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근거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침은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성전환증이라는 진단을 받을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생식능력 제거와 외부 성기 수술을 필요로 하고 있어 신체 침습적입니다. 이러한 수술은 보험 미적용으로 수술비가 몇 천 만원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최근 외부성기 성형 요건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지만,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용 정보조회, 범죄기록조회 의무 제출 등 법적 성별 정정을 원하는 개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성별 정정을 하지 않는 경우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공공기관에서의 증명서 발급 또는 은행 업무를 처리해야 할 때 서비스를 거부당하거나 혐오표현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또한, 구직과정에서 사진을 부착하는 서류 전형 또는 인터뷰에서 번번이 차별/혐오적인 표현을 경험합니다. 채용이 된 이후에도 일터 안팎의 화장실을 비롯해 성별 분리 공간/문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7. '동성애=AIDS' 이거 정말 사실인가요?

AIDS의 원인은 동성애가 아닌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입니다. 반동성애 운동을 하는 집단에서 가장 많이 내세우는 주장 중 하나가 바로 '동성애는 AIDS를 확산시키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질병에 대한 낙인과 공포를 강화하는 동시에 성소수자 특히 게이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한다는 점에서 악의적입니다.

수십 년간 진행되어 온 치료제의 발전으로 HIV는 효과적으로 관리가 가능하여 만성질환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치료를 잘 받는 경우에는 감염력도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치료가 최선의 예방인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HIV/AIDS에 대한 낙인과 공포를 조장하고 특정 집단만의 문제로 여기는 것이야말로 에이즈 예방에 걸림돌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IV 감염인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 8.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합니다.

### 앨라이(Ally)가 되는 법을 알려주세요!

- 1) 처음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앨라이

가 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 자료집을 읽는 지금 이 순간 이미 첫걸음을 디뎠습니다. 다음 단계는 배운 내용을 동료 및 주위 사람들과 공유하고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실천에 나서는 것입니다.

- 2) 때때로 성소수자는 자신이 어떻게 스스로 성소수자로 정체화하게 되었는지 또는 성소수자로서 어떤 차별들을 경험했는지 대해 이야기하곤 합니다. 궁금한 점이 많겠지만 우선 경청해주세요. 질문보다는 공감을 먼저 표시해주세요. 또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을 존엄과 존경으로 대해주세요.
- 3)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에 기반한 혐오적인 발언이나 행동에 맞서 주세요. 성소수자 친구와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4)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지지하는 것은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대신해서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소수자가 스스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성소수자가 다른 사람에게 커밍아웃하는 것에 대한 조언을 구한다면 결정을 대신해주는 것보다는 커밍아웃에 뒤따르는 잠재적인 위험, 커밍아웃하면 좋은 점, 나쁜 점에 대한 조언을 주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9. 성소수자에게 안전한 공간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 1) 언어 사용에 주의해주세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특정 단어의 사용 또는 미사용은 개인의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언어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성소수자에게 지지를 표시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 또는 모임에서 사람들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면 서로의 연애 경험에 대해서 공유하거나 물어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성적 지향을 단정 짓는 여자친구/남자친구, 아내/남편과 같은 단어 대신에 애인이나 파트너와 같은 성중립적인 단어를 사용하세요.

또한, 처음 만나거나 서로를 소개하는 자리에서는 각 개인이 어떤 호칭으로 불리는 것을 선호하는지 물어보세요. 호칭에 대한 질문은 상대방의 성별 정체성을 존중하는 첫걸음이자 해당 공간이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성소수자를 포용하는 분위기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 2) 성소수자 친화적인 물리적 환경을 조성합시다!

트랜스젠더들은 화장실, 샤워실 또는 탈의실 등 두 가지 성별로만 나뉘어 있는 공간을 사용하는 데 불편을 겪곤 합니다. 화장실 이용의 불편함은 각종 배뇨 관련 질환의 유병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성별에 따라 분리되지 않고 독립적인 이용이 가능한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하세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성소수자들이 해당 공간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무지개 깃발과 같은 성소수자 친화적인 물품을 비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서구에서 유래되었지만 무지개 깃발은 전 세계에서 성소수자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역 성소수자 단체에서 배포하는 전단지나 소책자를 로비나 입구 책꽂이에 비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3) 비밀보장에 신경 써 주세요.

성소수자들은 커밍아웃을 하거나 본인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이하 'SOGI')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웃팅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성소수자는 언어적/물리적 폭력 피해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회사나 단체는 비밀보장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상담을 진행할 때에는 시작 전에 상담의 내용에 대해 비밀유지가 보장됨을 명시하고 2명 이상의 단체 상담 또는 모임을 진행하는

경우 시작 전에 비밀보장 각서를 작성하거나 비밀보장 정책을 같이 소리 내어 읽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대화에서 나온 내용이 기록되거나 재생산되는 경우 그 형태와 관계없이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소수자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과정입니다.

---

## 성소수자와 관련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www.lgbtpride.or.kr](http://www.lgbtpride.or.kr)  
전화: 02-715-9984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www.chingusai.net](http://www.chingusai.net)  
전화: 02-745-7942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www.kscrc.org](http://www.kscrc.org)  
전화: 0505-396-3030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핑통** [www.ddingdong.kr](http://www.ddingdong.kr)  
전화: 02-924-1227

**트랜스젠더를 위한 정보·인권 길잡이** [transroadmap.net](http://transroadmap.net)

**LGBTQIA+ and Allies in Korea** [www.facebook.com/groups/lgbtkorea](http://www.facebook.com/groups/lgbtkorea)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www.facebook.com/quv.korea](http://www.facebook.com/quv.korea)

**요그야카르타 원칙** [www.tongcenter.org/nondiscrim/sogi/yogyakarta](http://www.tongcenter.org/nondiscrim/sogi/yogyakarta)

---

## 참고문헌

- <혐오의 시대에 맞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12가지 질문>, 2016, 한국성소수자연구회(준)
-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2014, 국가인권위원회
-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없는 학교: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를 위한 유네스코 가이드북>, 2013,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이런 질문도 괜찮아요>, 2015, 한국레즈비언상담소
- <Q로 만드는 울타리>, 2016,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핑통
- “How to be an LGBT ally”, Human Rights Campaign

# 성소수자 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 1. 성소수자 난민이란?

‘성소수자 난민’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치·종교 등의 다른 사유로 난민이 된 사람들 중 성소수자인 사람’ 그리고 ‘성소수자라는 점을 난민 사유로 하는 사람’입니다. 전자의 경우 난민인정 과정에서 자신의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이 논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밝힐 필요가 없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이하 SOGI) 배경을 입증해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 2.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난민이 될 수 있나요?

앞서 살펴본 대로 난민협약상의 난민 유형 중에는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이라는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국가에서 특정 사회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박해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그 국가로부터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나라에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관한 난민 신청 가이드라인’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출신국의 법률 혹은 사회문화적 규범에 따라 박해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면 난민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법원도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이 난민 신청자의 출신국 사회의

도덕규범이나 법률에 어긋나 그것이 외부로 드러날 경우 그로 인해 박해에 노출되기 쉬우며, 이에 대해 출신국 정부에서 보호를 거부하거나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정 사회집단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3. 현재 한국에서 성소수자 난민은 어떤 기준을 통해 심사되고 있나요?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자신이 출신국에서 박해의 대상이 되는 집단에 속한다는 사실과 함께 ② 그로 인해 자신이 출신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신이 고국에서 박해를 받는 특정 종교단체, 특정 정당의 일원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향의 지리적 특성, 출신 지역, 직업 및 각종 활동 증명서 등을 통해 특정 집단에 속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정치적 난민들은 자신의 정치적 활동과 관련하여 정당가입서와 같은 각종 증명서나 신문기사 등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그런데 성소수자 난민의 경우에는 ‘성소수자’라는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군가가 ‘성소수자’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한 사람의 성별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이 증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난민 신청자가 성소수자임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신청자의 성관계

횡수, 성관계 상대, 체위 묘사 등에 관한 부적절한 질문과 대답이 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민 신청자 중에서는 박해의 위협으로 인해 본국에서 자신의 성적체성을 철저히 숨겨야만했던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난민 신청과정에서 평생 숨겨왔던 자신의 성적체성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거나 구체적인 진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혼란스러운 와중에 난민 신청자는 본인에게 던져진 질문이 부적절한지 가늠하지 못한 채 성실히 대답하게 됩니다.

간신히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점을 증명하더라도, 박해 가능성 입증에서 다시 한 번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법원에서는, 출신국에서의 박해가 두려워 자신의 성적 지향 등을 철저히 숨기고 산 사람의 경우 앞으로 이를 잘 숨기면 박해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과거 출신국에서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자신의 성적체성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동성파트너를 만난 경험을 SNS 등에 꼼꼼하게 기록하여 남겨 두고, 출신국의 성소수자 문화 전반에 대하여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 모든 것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는 기억력과 언변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출신국에서 박해를 당한 경험이 있고 그 박해 사실까지도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성소수자 난민으로 인정받기, 정말 어렵습니다.

#### 4. 우리나라에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해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성소수자를 처벌하는 명시적인 법규가 존재하거나 성소수자를 배척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여러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된 국가 출신인 난민의 경우, 성소수자라는 점이 입증되고 그로 인해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난민 신청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위협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에 자신의 성적체성을 드러내지 못하였다면 그 자체도 박해라고 보아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도 존재합니다.

#### 5. 성소수자 난민 요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유엔난민기구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관한 난민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난민의 SOGI 배경을 확인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뢰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SOGI에 바탕을 둔 난민 요건을 검토할 때에는 난민 신청자의 증언만이 그들의 SOGI 배경을 입증하는 유일한 증거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관은 성소수자 난민 중 많은 이들이 본국에서 자신의 성적체성을 커밍아웃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친밀한 관계도 가져본 적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난민은 형사처벌, 무

단 자택 수색, 차별, 사회나 가족으로부터의 배제 등과 같이 자신의 정체성이 발각될 경우 받게 될 가혹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을 억누릅니다. 난민 신청자가 박해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을 객관적으로 직면하고 있다면, 난민 요건에 있어서 공포는 ‘충분한 근거’를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려는 어떠한 시도도 박해에 대한 주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심사관은 해당 신청자의 진술을 통해, 당사자가 스스로를 성소수자로 정체화하는지 여부와 만일 그렇다면 언제 스스로가 자신을 성소수자라고 인지했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서적 외상, 낙인, 내재화된 동성애혐오, 본국 정부에 대한 공포 혹은 불신, 수치심, 문화적 영향, 나이, 교육 수준, 개인의 자각 수준 등의 여러 요소들 때문에 난민 신청자가 일관되거나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즉, 난민 신청자의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해당 난민 신청자가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는 방식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대해 강한 수치심을 가지고 있거나 동성애혐오를 내재화하고 있어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거부하거나 이성애규범이나 역할에 맞는 언어나 행동을 취하기도 합니다.

모든 난민이 자기 정체성을 LGBTI 등과 같은 용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L, G, B, T, I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L, G, B, T, I라는 것은 각각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용어를 그대로 적용하면 난민 신청자의 신뢰성 평가가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성애자들은 종종 난민 심사 결과에서 동성애자로 분류되고, 인

터섹스(간성)는 아예 성소수자로 간주되지 않기도 합니다. 심사관들은 난민이 자기 정체성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결코 해당 난민의 SOGI 배경이 거짓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즉,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은 의학이나 정신과학 혹은 심리학의 문제가 아닌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고,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개인별로 다른 시기에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6. 국가정황정보조사(COI)를 했지만 별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소수자 난민 신청자가 주장하는 박해에 대한 공포가 객관적으로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음을 밝히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배경 자료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참고해야 할 내용에는 출신국의 법적 보호체계와 실효성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보통 자료가 부족해 객관적 증거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난민 신청자의 공포가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신청을 기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억압이 심한 국가들의 경우 실제 성소수자이거나 성소수자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당한 인권 유린에 대한 정보가 거의 또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 열악해 아무도 커밍아웃하지 않아 학대 사건이 보고되지 않고 성소수자 조직들은 공개적으로 존재하

지 않거나 존재를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엔난민기구 가이드라인은 출신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때 난민 지위 심사관은 신청자의 진술에 의존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캐나다 법정들도 신청자 증언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나 의심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 자료의 부족 때문에 진술을 기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해 왔습니다.

## 7. 난민 심사 과정에서 성소수자 난민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한 남성이 여성과 결혼해 자녀가 있다면 이러한 신청은 바로 거짓된 신청으로서 기각돼야 마땅할까요? 성소수자로서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반면 이성애자로서 살아온 흔적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과거의 이성애 전력은 난민 신청에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레즈비언의 경우 생존을 위해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이용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현재 난민 신청자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할 수 있으나 여성난민은 상대적으로 생존경쟁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주거나 생존을 위해 남성과 동거를 선택하거나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기도 합니다. 성소수자를 처벌하거나 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 정책과 동성애혐오가 내재된 사회문화적 분위기로 인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철저히 억누르며 이성애자로서의 삶을 강요당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난민 신청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종종 그들의 존재와 난민 신청사유가 법원 판결 혹은 관련 기사 등으로 인해 외부로 알려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SOGI 배경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이나 난민 인정이 된 사람들의 경우에 자신의 사건이 공개된다는 것은 곧 아웃팅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한 게이 난민 신청자의 사건에서 그의 실명·출신국가·성적 지향 등이 국내 반동성애 단체들에 알려지면서, 사건과 무관한 단체가 ‘동성애자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에이즈 확산의 위험을 높이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당 법원에 제기하는 식으로 사건에 직접 개입한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범죄와 다를 바 없으며, 박해를 피해 온 난민이 한국에서 또 다른 위협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양성애자 난민 신청자의 경우는 심사 과정에서 더욱 인권침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심사관이 성적 지향에 대해 이성애 아니면 동성애, 둘 중 하나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트랜스젠더 난민의 경우 트랜지션을 하지 않은 수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음에도 트랜지션 과정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 8. 성소수자 난민을 만날 때 특별히 배려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성소수자 난민은 제한된 정보와 자원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하며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도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당할 위기에 처하기 쉽습니다. 성소수자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지점은 매우 다양합니다.

### 1) 대명사

성소수자 난민과 외국어로 소통을 할 때 어떤 대명사로 불리길 원하는지, 즉 어떤 성별로 대하길 원하는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성(Ms./She)나 남성(Mr./He) 또는 성별 구분 없는 대명사인 Mx/Ze를 쓰는 것을 원하는지 파악하여 성소수자 난민의 요청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단, 성소수자 난민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성소수자 난민의 성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는 특정 대명사 사용을 조심해야 합니다.

### 2) 통역

성소수자 난민은 통역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다른 이들에게 드러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난민의 성정체성에 대한 비밀 유지와 당사자의 안정감을 위하여 동일한 출신지의 통

역인은 가급적이면 지양하되, 불가피할 경우 당사자와 협의 후 동의를 얻어 통역을 진행합니다. 통역을 연결한 기관 혹은 담당자는 통역인이 비밀유지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서약 등을 통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야 합니다. 또 통역인 섭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소수자 난민 당사자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거듭 소통하고, 통역인이 성소수자 관련 어휘를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무료통역서비스

성소수자 난민에 특화된 통역은 아니지만, 급할 때 무료로 통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서울 다산콜센터 통역 서비스 120dasan.seoul.go.kr | 전화: 120

bbb Korea(비비비 코리아) www.bbbkorea.org | 전화: 1588-5644

다누리콜센터 통역 서비스 www.liveinkorea.kr | 전화: 1577-1366

### 3) 거주 및 공동체

성소수자 난민 중에는 자신의 출신지 공동체의 구성원과 함께 또는 해당 구성원이 있는 근처에 거주하는 것을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부는 생존을 위해 자신의 성정체성을 공개하지 않고 해당 공동체와 가까이 지내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두 가지 가능성을

배려하여 거주 지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거주지에 룸메이트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성적체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룸메이트가 성소수자를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 잘 지낼 수 있다는 가능성은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거주 지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쉼터 및 공동체

현재 한국에는 성소수자 난민만을 위한 쉼터 혹은 공동체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인 성소수자를 위한 다양한 모임은 있지만, 대부분은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동체이기에 난민이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 공동체를 찾길 원하는 성소수자 난민의 경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나 한 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등과 같은 인권단체에 연락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www.lgbtpride.or.kr](http://www.lgbtpride.or.kr)

전화: 02-715-9984

이메일: [lgbtaction@gmail.com](mailto:lgbtaction@gmail.com)

친구사이 [www.chingusai.net](http://www.chingusai.net)

전화: 02-745-7942

이메일: [contact@chingusai.net](mailto:contact@chingusai.net)

### 4) 가족

일부 성소수자 난민의 가족은 당사자의 성적체성을 알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자신의 성적체성을 아직 가족에게 밝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해당 사실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 또한 성인과 마찬가지로 비밀을 유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비밀을 보장해야 합니다.

### 5) 정신 건강

성소수자 난민은 종종 정신과 진료나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자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미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부 성소수자 난민은 상담사가 자신의 성적체성을 정신 질환으로 간주하고 전환치료를 시도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아프거나, 정상적이지 않다는 말을 듣고 자란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심리 상담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는 젠더 폭력 등 상처를 받은 경험으로 인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길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중 트랜지션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경우에는 호르몬 및 신체적 변화 등으로 인해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을 경험하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및 자살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트랜스젠더의 경우에는 여전히 정신질환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신 건강 서

비스를 더욱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소수자 난민들은 외로움, 실업, 경제적 어려움, 국가와 정체성 상실 등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소수자 난민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들 중에 누군가가 심각한 우울증 징후 등이 있는지 관찰하고, 치료 받는 것에 대한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우울증이나 자살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공통적인 경고 신호는 ① 자살이나 죽음에 대해 말하기(자살기도), ② 지속적인 슬픔 또는 절망, ③ 사회적 상호작용의 변화/철회, ④ 약물이나 알코올 사용 증가, ⑤ 중요한/개인적인 물건 버리기, ⑥ 줄어든/결핍된 미래에 대한 감각, ⑦ 동기 부족, ⑧ 산만함 또는 집중력 부족, ⑨ 수면 또는 식습관 변화, ⑩ ‘가치 없는’, ‘부담’, ‘쓸모없는’ 등의 표현이 있습니다.

PTSD는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증상 또는 사망의 위협과 같은 사건을 하나 이상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PTSD의 반응은 격렬한 두려움, 무력감 또는 공포와 관련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외상 경험은 성소수자 난민이 자신의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에 불균형을 야기 할 수 있습니다. PTSD는 반복적인 꿈, 플래시백, 침입 기억, 사건에 대한 생각을 포함하여 해당 사건을 재경험하게 합니다. PTSD 증상에는 수면 장애, 갑작스럽고 과장된 놀란 반응, 지나친 경계, 분노 등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PTSD의 결과 중 하나입니다. 우울증은 절망감이나 압도적인 슬픔, 기억 장애, 사회성 결여, 쉽게 동요되거나 집중하기 어려운 느낌을 지속적으로 가지게 합니다. 심한 우울증을 가진 사람은 두통 및 수면 장애와 같은 증상을 호소합니다.

### 상담

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람마음 [traumahealingcenter.org](http://traumahealingcenter.org)

전화: 02-747-1210

이메일: [connect@traumahealingcenter.org](mailto:connect@traumahealingcenter.org)

- 성소수자 난민이 안전하게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 영어로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 비용은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 참고문헌

- “Refugee Status Claims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 Practitioners’ Guide”, 2016,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 “Rainbow Response, A practical guide to resettling LGBT refugees and Asylees”, ACF/Heartland Alliance

# HIV 감염인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

## 이것만은 알아두자!

### HIV와 AIDS

HIV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의 약자입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를 HIV 감염이라고 하며, HIV 감염인은 체내에 HIV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HIV는 인체에 있는 면역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치료를 안 하면 면역력이 서서히 떨어지게 됩니다.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지면 각종 감염성질환(기회감염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AIDS(에이즈)라고 부릅니다. AIDS(에이즈)는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의 약자입니다.

### CD4+ T(면역수치)와 HIV-RNA 정량 검사

CD4+ T 세포는 인체 면역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HIV는 CD4+ T 세포를 포함한 면역세포에 영향을 줘 면역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CD4+ T 세포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HIV 감염에 의해 면역기능이 그만큼 저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적절한 항바이러스 치료를 잘 받으면, CD4+ 세포 수는 다시 증가합니다. HIV-RNA 정량 검사는 감염인의 몸속에 HIV가 얼마나 많이 증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HIV-RNA 정량 검사에서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체내에

---

HIV가 많음을 의미하며, 이 때 면역기능은 더 빨리 저하됩니다. 다만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경우 증가되었던 HIV가 줄어들면서 HIV-RNA 정량 검사 수치도 감소합니다. HIV-RNA 정량 검사 수치는 50 copies/mL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감염인의 경우 대부분 '미검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기회감염

건강한 사람에게는 감염증을 잘 일으키지 않으나 면역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서는 심각한 감염증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2차 감염' 또는 '에이즈 정의 질환'이라는 말과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 수직감염

임산부가 HIV에 감염된 경우 임신 중 태반을 통해서, 출산 중 태아가 산도를 통과할 때 혈액접촉이 있어서, 또는 수유 과정에서 태아 혹은 신생아가 HIV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머니로부터 아이에게 감염되었을 때 수직감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수직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HIV 감염 임산부가 수직감염 예방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 HIV 감염인과 AIDS환자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흔히 ‘에이즈약’이라고 부르는 항바이러스제는 HIV 증식을 억제하고 활성화되는 것을 막습니다. 항바이러스제를 꾸준히 복용하면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면역세포를 공격하는 힘도 약화되고 면역력을 거의 비감염인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HIV 감염이란 일정한 면역지수를 유지하여 신체상 뚜렷한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증상만 갖고 있는 상태이고 에이즈환자란 HIV에 감염된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면역체계가 약해져 CD4 세포 수가 200 cell/mm<sup>3</sup> 이하인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와 에이즈 질환에 속하는 각종 기회감염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과 항바이러스제의 발달로 HIV 감염인이 모두 에이즈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빨리 치료를 시작하면 평생 특별한 질병 없이 일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기대여명도 비감염인과 거의 같습니다. 에이즈환자도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 면역력이 높아지면 기회질환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IV확진을 받은 모든 감염인에게 바로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민의 경우 HIV검진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 상태를 모르고 있거나 HIV 감염이 확인된 이후에도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접근권이 취약하고 추방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초기에 치료받는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난민을 만나는 사람들은 HIV와 AIDS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본인이 지원하는 난민이 에이즈 상태로 가지 않도록 당사자에게 치

료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이들의 건강문제에 빠르게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HIV와 AIDS를 구분하지 않고 몽둥그려 에이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HIV 감염인과 에이즈 환자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도 있지만, 지나친 도식적인 분류는 에이즈환자를 무조건 아픈 사람으로 규정하는 등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HIV 감염인은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치료여부에 따라 감염인의 건강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HIV 감염인 난민과 공동생활을 해도 괜찮나요?

어떤 분들은 HIV 감염인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가벼운 스킨십을 하거나,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 HIV에 감염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민을 지원하는 한 기관에서는 식사 시간에 감염인 난민에게만 플라스틱 1회용 수저를 제공하기도 했고, 공동생활이 어렵다며 나가라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그 과정에서 겪었을 배제와 모욕감을 생각해보면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충분한 양의 바이러스가 체내로 들어와야 HIV에 감염됩니다. 사람의 모든 체액에는 HIV가 있지만 그 중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바이러스를 함유한 체액은 정액, 질분비액, 모유와 혈액뿐입니다. 침, 땀에는 극소량의 HIV가 존재하기 때문에 피부를 접촉하는 경우, 한

그릇에 담긴 음식을 함께 떠먹은 경우에는 전염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HIV는 인간의 체내에서만 생존하고 증식하면서 감염인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사람 사이에서 전파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HIV 감염인을 문 모기나 벌레 등을 통해서 전염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감과 달리 HIV는 환경에 민감한 바이러스라서 혈액이나 체액이 아닌 환경에서는 생존력이 낮아 인체를 벗어나서는 바로 비활성화되거나 사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생활을 하는 공간에서 특별히 주의할 문제는 없는 셈입니다. 칫솔, 면도기 같은 개인 위생물품을 따로 쓰기만 하면 됩니다. HIV가 아니더라도 개인위생물품을 공유하지는 않지요.

#### HIV는 다음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감염되지 않습니다!

- 감염인과 식기나 컵을 함께 사용할 때
- 감염인과 화장실 변기 등을 함께 사용할 때
- 감염인과 침구류 등을 함께 사용할 때
- 감염인과 피부접촉이나 포옹, 가벼운 키스를 할 때
- 감염인의 기침이나 재채기, 구토물로 인해
- 감염인과 수영장이나 대중목욕탕을 함께 사용할 때
- 모기 등 벌레 물림으로 인해
- 감염인과 함께 운동할 때
- 감염인의 땀, 눈물, 침 등에 노출될 때

### 3. HIV 감염인 난민은 모두 동성애자인가요?

많은 이들이 에이즈 하면 바로 동성애, 문란함, 성매매, 불치병 등을 떠올립니다. 부정적 이미지들은 에이즈를 공포와 죽음의 질병, 동성애자들의 천형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HIV/AIDS는 남성 동성애자들‘만의’ 질병이 아닙니다. HIV는 감염인의 체액과 혈액 등을 통해 감염되는 질병이지, 개인의 성적체성이나 성적 지향에 의해 감염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각 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적 조건과 유행률(전체 인구 중 HIV에 감염된 사람의 비율)에 따라 HIV 감염에 취약한 대상이 달라집니다. 아프리카 지역은 여성 감염인의 수가 많고, 동남아시아 지역은 성매매를 통한 감염 빈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동성 간 성관계로 인해 HIV 감염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동성애자들만 HIV에 감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들만 HIV에 감염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신은 에이즈와 무관하므로 예방이나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견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난민을 만나는 사람들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가 취약할 수록 HIV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많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난민 신청자의 본국 상황이 제각각이므로 HIV에 감염된 이유도 제각기 다를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HIV에 감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난민 신청자가 동성애자라고 선불리 판단할 경우 서로 오해가 쌓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하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 4. HIV 감염인 부모도 임신 출산할 수 있나요?

아버지가 HIV 감염인이고, 어머니는 비감염인이라면 아기가 수직감염 될 가능성은 없으며, 어머니가 HIV 감염인이고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아기의 감염 가능성은 20~40% 정도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HIV 감염인이라고 할지라도 치료제를 잘 복용하고 정기적인 진료 및 건강관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면 아기의 감염 가능성은 5% 이하로 낮아집니다. 따라서 부모가 감염인이라고 하더라도 출산하지 못할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감염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임신 출산의 권리를 침해받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HIV 감염인이 임신 출산 계획을 갖고 있거나 임신한 HIV 감염인을 만나면 작은 산부인과에 가지 말고 의료인 감염인 상담사업을 하고 있는 종합병원을 안내해주세요. 수직감염 예방을 위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출산 시 산모에게 AZT라는 항바이러스제를 정맥주사 해야 하고 신생아에게는 AZT 시럽을 먹여야합니다. 이 약은 국내에 없기 때문에 출산을 앞두고 병원에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설령 출산이 임박해서야 병원을 가게 되는 상황이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서울의료원에서 여러분의 AZT를 준비해 두고 있어 다른 병원으로 긴급히 보내기도 합니다. 만약 HIV에 감염된 산모가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고 있지 않다면 산모 역시 항바이러스 치료를 시작할지 여부를 감염내과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 5. HIV 감염을 이유로 강제출국 당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HIV 감염을 이유로 강제출국을 시키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지만, 유엔에이즈UNAIDS 등 국제사회는 오래전부터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입출국 통제를 하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우리나라도 HIV 감염을 이유로 강제출국 시키는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 HIV 감염인 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 1. HIV 감염인 난민을 만났을 때 다른 난민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나요?

HIV 감염인 난민의 경우 입국하기 전에 HIV 감염 사실을 알고 오는 경우도 있고, 난민 신청과정에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HIV 감염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학과 치료제의 발달로 HIV/AIDS는 더 이상 죽음의 질병이 아니지만 어느 나라든지 에이즈에 대한 편견과 공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HIV 감염 사실을 알게 된 직후에는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곳의 에이즈 정책이나 제도를 모르게 때문에 더욱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상태를 이해하고, 함께 필요한 것들을 찾아나가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민은 HIV 감염이 확인된 이후에도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HIV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밝혔다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지, 병원을 다니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역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지, 어느 병원을 다니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치료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파악해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난민 지위를 얻지 못하거나 박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추방당할까봐 두려워서인지, 치료에 대한 정보를 전혀 얻지 못했기 때문인지,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인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인지, 의사소통 문제 때문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해시키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병원을 다니다 말거나 항바이러스치료를 비정기적으로 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 시행 병원		
지역	의료기관명	전화
서울 (9개 병원)	강동성심병원	02-2152-1051
	고대구로병원	02-2626-2828
	국립중앙의료원	02-2260-7546
	보라매병원	02-870-3898
	삼성서울병원	02-3410-2131
	서울성모병원	02-2258-1242
	서울아산병원	02-3010-6923
	서울의료원	02-2276-7801
인천 (1개 병원)	세브란스병원	02-2228-5494
	인하대병원	032-890-2124
경기 (2개 병원)	아주대병원	031-219-7414
	고대안산병원	031-412-5026
강원 (1개 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033-731-1290
충청, 대전 (2개 병원)	충남대병원	042-280-8626
	충북대병원	043-269-6299
경상, 대구, 부산 (3개 병원)	경북대병원	053-200-5951
	경상대병원	055-750-9468
	동아대병원	051-240-5568
전라 (2개 병원)	전남대병원	062-220-6907
	전북대병원	063-250-2578

져 다른 기회질환에 걸릴 수 있고, 항바이러스제에 내성이 생길 수 있어 치료가 잘 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바이러스치료는 감염내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내과가 있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을 가야합니다. 특히 전국에 있는 20개의 종합병원에서는 감염인상담사업을 하고 있어 HIV 감염인이 병원을 이용하고 치료를 받는데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HIV/AIDS에 관해서라면 마음 편히 문의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우선은 표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 시행 병원]에 있는 병원 중

가까운 곳을 방문하거나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국에서 이미 확진을 받고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한국에서 처방받는 약과 다를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은 최근에 출시된 치료제를 사용하는 데 비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등의 경우 최신 치료제가 도입되지 못해 예전 약을 사용하고 있어 똑같은 약을 한국에서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내과 의사와 상의하여 자신의 건강상태에 맞는 치료제를 복용하면 됩니다.

## 2. 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HIV 감염인 난민에게 어떤 조언을 해야 하나요?

난민이 항바이러스치료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재정적 어려움 때문입니다. 항바이러스제 한 달 치 비용은 약 80만 원이고, 그 외 각종 검사비용이 추가됩니다. 난민인정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진료비의 90%는 건강보험을 통해, 나머지 10%는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민 신청자나 인도적체류지위자, 미등록이주민은 건강보험제도와 같은 의료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항바이러스 치료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복지부)]을 통해 입원, 수술, 출산 등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보장이 안 되는 이주민. 난민을 위한 지원은 안정적이지 않고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우선 서울의료원과 국립중앙

의료원을 방문할 것을 권합니다. 이 병원의 상담간호사들이 의료보장이 안 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연계를 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 이외의 지역이라도 그 지역의 병원에 문의를 해보십시오. 그 병원에서 지원이 어렵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안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용 때문에 자신의 건강을 포기하지 않도록 HIV 감염인 난민을 위한 안정적인 의료보장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 3. 갈 곳 없는(거주할 공간이 없는) HIV 감염인 난민에게는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요?

HIV 감염인을 위한 쉼터들이 있습니다. 우선 서울, 대구, 부산에 위치한 쉼터에 연락해 입소여부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거주쉼터이기 때문에 3~6개월, 최대 1년 정도 머물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지속여부, 감염인의 건강상태, 언어소통 등의 상황에 따라 입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보장이 안 되는 난민의 경우 서울의료원이나 국립중앙의료원을 다녀야하기 때문에 우선 서울쉼터에 문의해보기를 권합니다.

그 외 HIV 감염인을 지원하는 기관의 활동을 알고 있다면 주거지원 외에도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HIV 감염인을 위한 센터		
수행기관	전화	서비스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	[대구] 053-555-5448	단기거주 및 자립지원
구세군보건사업부	[부산] 051-621-0421	
가톨릭 레드리본	[서울] 02-727-2237	

**한국에이즈퇴치연맹** www.khap.org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전화상담, 면접상담 등을 통해 외국인 대상 무료익명검사를 진행하고, 의료기관 방문 시 언어지원, 한시적 진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02-927-4322

이메일: khap@kaid.or.kr

**운영**

- 전화 상담: 10시~17시
- HIV 검진: 예약 필수
- 방문 상담: 예약 필수

**지역사무소**

- 서울: 02-927-4322
- 안산: 031-495-0550
- 부산: 010-2654-4322, 010-2954-0550

**대한에이즈예방협회** <http://www.aids.or.kr>

거주지가 일정하다면 경제적 형편이 어렵거나 홀로 거주하는 경우 재가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입원 치료 시에 간병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입원한 의료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이즈상담센터에 HIV관련 정보와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화: 02-861-4114

운영: 평일 9시~18시

- 재가복지서비스(반찬 및 생필품지원, 방문상담 등) 문의: 02-859-5447
- 입원환자 간병서비스 문의: 02-861-5448
- 에이즈상담센터: 1599-8105

#### 4. HIV 감염인 난민이 한국에서 거주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차별은 무엇이 있을까요?

유엔에이즈는 전 세계 약 90여 개국의 HIV 감염인을 대상으로 낙인 지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낙인지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HIV 감염인은 다른 나라에 비해 직접적 차별경험의 지수보다 '내재적 낙인'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64.4%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고, 75.0%

가 자신을 탓하고 있었으며, 59.6%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고, 36.5%가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감염인의 심리적 상태가 어떤지, 한국 사회에 에이즈와 관련하여 얼마나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존재하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HIV 감염인 76.2%가 ‘다른 질병으로 병원 방문 시 HIV 감염인임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하였고, 40.5%가 ‘치료/수술/입원 시 감염예방을 이유로 별도의 기구나 공간을 사용했다’고 했으며, 26.4%가 ‘HIV 감염 사실 확인 후 약속된 수술을 기피하거나 거부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많은 감염인이 진료거부를 비롯한 다양한 의료차별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장기요양이 필요한 에이즈 환자를 위한 요양병원이 부재한 실정인데, 아직까지도 정부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감염인들이 자신을 부정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난민 감염인 또한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을뿐더러, 난민이기 때문에 겪는 부가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의료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난민신청자나 인도적체류지위자는 막대한 치료비를 오롯이 혼자서 감당해야 합니다.

‘차별’의 경험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통해서 지금보다 나은 삶의 환경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5. HIV 감염인 난민을 만날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난민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HIV 감염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호기심을 가지고 “왜 감염되었는지”와 같은 질문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이니까요. 설부른 단정도 금물입니다. 문란한 성생활을 했기 때문에,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HIV에 감염되었을 것이라는 판단은 난민 지원과 무관하며 때로는 원활한 지원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질병정보를 활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을 위해 부득이하게 개인의 질병정보를 타 기관에 전달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염원인과 관련해 잘잘못을 따지는 태도도 지양해야 합니다. 감염 사실을 인지한 직후에는 자신을 감염시킨 사람을 원망하거나 때로는 삶을 포기하는 등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질병감염의 책임을 개인의 부주의로 돌리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HIV 감염인 난민의 성생활이나 교제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감염인이 HIV 감염 사실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기까지 힘든 시간을 지지와 지원을 통해 격려하고, 감염인 스스로 자신의 삶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6. HIV 감염인 난민에게 소개할 수 있는 자조모임은 있나요?

대표적인 감염인 자조모임으로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가 존재합니다. 2012년에 설립된 KNP+는 HIV/AIDS감염인의 권리증진과 차별해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고 현재 PL사랑방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방문도 가능하며 함께 식사를 하거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면 좋습니다.



#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 협력 단체 소개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는 아래 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을 주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성소수자 난민이나 HIV/AIDS 난민과 관련해 문의 사항이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연락할 수 있습니다.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www.kpil.org](http://www.kpil.org)

국내 최초로 공익활동을 본업으로 삼은 공익변호사 단체로,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구체적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환경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 인권의 경계를 확장하고, 변화를 지향하는 법적 실천들을 하며, 법을 인권 보장과 사회 변화를 위한 열린 도구로 기능하게 하는 실천을 '공익법 활동'으로 공유하고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메일: [gonggam@gmail.com](mailto:gonggam@gmail.com)

### 난민인권센터 [www.nancen.org](http://www.nancen.org)

난민인권센터는 모든 인류의 존엄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바탕으로, 한국에 온 난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난민인권센터는 한국사회에서 배제되고 있는 난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사회적 인식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인권침해 대응, 권리 상담, 연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refucenter@gmail.com](mailto:refucenter@gmail.com)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www.lgbtpride.or.kr](http://www.lgbtpride.or.kr)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20년간 실천과 연대를 중요한 활동 원칙으로 삼고,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젠더퀴어, 인터섹슈얼 등 다양한 성소수자들이 모여 모든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회원기반 성소수자 인권단체입니다. 청소년 성소수자, HIV 감염인 인권, 성소수자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이슈에 힘쓰며, 2000년대 후반부터 대두된 혐오 선동에 맞서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lgbtaction@gmail.com](mailto:lgbtaction@gmail.com)

###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http://www.aidsmove.net>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는 에이즈라는 질병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하고 차별 받는 감염인과 환자들의 인권과 치료권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연대기구입니다. 나누리 +는 국내적 문제 뿐 아니라 감염인과 환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제적 차원의 활동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수자 난민 권리를 위한 첫걸음

## 무지개는 국경을 넘는다

기획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디자인 디자인스튜디오 다다름

인쇄 한울타리

발행일 2017년 12월 31일

이메일 rainbowrefugee2017@gmail.com

이 책의 저작권은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rainbowrefugee2017.wordpress.com](http://rainbowrefugee2017.wordpress.com)

[facebook.com/rainbowrefugeeskr](https://facebook.com/rainbowrefugeeskr)





소수자 난민 권리를 위한 첫걸음  
무지개는 국경을 넘는다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rainbowrefugee2017.wordpress.com](http://rainbowrefugee2017.wordpress.com)  
[fb.com/rainbowrefugeeskr](https://fb.com/rainbowrefugeeskr)